

영업권 및 부의영업권 회계처리 실태 연구*

김호진(제1저자)
요크대학교 박사후과정
(hyojinkim0317@gmail.com)
윤순석(제2저자)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yoons@chonnam.ac.kr)

.....

영업권과 부의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고 이후 상각 및 환입과정에서 보고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동시에 영향을 준다. 이런 이유로 기업은 상각 및 환입금액과 상각기간을 조정해 보고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영업권이나 부의영업권의 이와 같은 회계특성을 활용하여 이익조정을 실시한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연결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회계처리 현황을 분석한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제정이후인 2000년부터 영업권과 부의영업권 금액의 중요성과 인식권수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둘째, 회계기준에서 영업권 상각 및 부의영업권 환입과 관련하여 명확하고 상세한 보고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공시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표현충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셋째, 영업권과 부의영업권의 주된 발생원천은 연결대상기업간의 투자제거차액이며, 특히 부의영업권의 경우 계열회사간의 기업결합 거래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상각·환입기간의 보고에 대한 연결감사보고서 주석과 재무제표 간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정액법을 사용하여 상각·환입하고 있는 기업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기업에서 비체계적인 상각·환입금액을 설정하여 보고이익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다섯째, 당기순이익이 상대적으로 높은 해에는 보고이익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영업권을 이례적으로 많이 상각하고, 반대로 당기순이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해에는 보고이익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부의영업권 환입액을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영업권 상각기업은 비상각기업에 비하여 재량발생액이 유의하게 낮았으나, 부의영업권 환입기업은 비환입기업에 비하여 재량발생액이 유의하게 높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영업권과 부의영업권 회계처리의 취약점을 최초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부의영업권이 우리나라에서 유독 빈번히 인식되고 있는 원인이 계열기업간 결합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동일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계열기업간의 결합거래에서 발생한 부의영업권으로 보고이익을 쉽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표현충실성과 상각·환입의 비체계성 면에서 기업의 보고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영업권과 부의영업권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절차가 부실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 또한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주제어: 영업권, 부의영업권, 부의영업권 환입, 영업권 상각, 기업결합

.....

1. 서론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M&A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기업결합 건수가 2004년부터 급증하여 1981년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이래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기업 간 시너지확보를 위한 선진국의 기업결합 형태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계열회사간의 기업결합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계열회사에 대해서는 이미 지배주주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합에 의해 실질적인 지배권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더군다나 기업결합은 기업의 장기적 성장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계열회사간의 기업결합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지배주주가 기업결합에서 비롯되는 회계의사결정을 기회주의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기업결합의 급격한 증가는 기업재무보고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결합에서 비롯되는 영업권과 부의영업권 관련 회계처리 실태를 실제사례와 주식보고상황 및 재무제표 보고상황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결감사보고서의 주석에 나타난 영업권과 부의영업권의 내용을 분석하여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영업권과 부의영업권의 회계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상각과 환입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영업권상각 및 부의영업권환입이 보고이익에 미칠 정도의 크기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이 재량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기업결합은 세금과 기업지배구조를 주로 고려하여 실시하므로 영업권과 부의영업권은 이에 따른

파생적인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업권과 부의영업권 인식 후 상각과 환입과정을 통해 보고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회계처리 특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기업이 의도적으로 영업권과 부의영업권을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부의영업권 발생은 실질적인 염가매수가 아닌 평가의 오류나 공정하지 못한 거래에서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피매수회사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매수원가와 비교하여 영업권 또는 부의영업권을 인식해야 하지만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대응치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일반적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신현걸, 2004). 우리나라 기업결합의 상당수가 지배주주의 영향 하에 있는 계열회사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능성은 더욱 높다. 계열회사간 기업결합의 경우 굳이 번잡하고 신뢰성이 약한 공정가치를 사용할 유인이 없으며, 피매수회사의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보아도 기업결합당사자 간의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계열회사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편의상 영업권 인식을 원할 때는 매수원가가 장부금액에 대한 매수자의 지분을 초과하도록 결정하고, 부의영업권 인식을 원할 때는 매수원가가 장부금액에 대한 매수자의 지분에 미달하도록 결정하더라도 계열 전체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부담이 없을 것이다.

실제로 장부금액보다 낮게 사들인 관계회사 주식을 공정가치가 아닌 장부금액으로 평가하고 그 차액을 일시에 이익으로 반영함으로써 회계기준을 어기는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한국경제신문, 2002. 3. 18). 이는 특히 기업인수·합병 과정이 복잡해서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자산가치(장부금액)가 과대평가되는 경우가 많은 현상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도 있다(동아일보, 2002. 6. 27).

이와 같은 기업결합 환경의 특수성과 결합 후 회계처리의 재량성으로 인하여 계열회사들은 필요에 따라 기업결합을 이익조정 수단으로 기회주의적으로 활용할 개연성이 있다.

1999년에 개정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이하 「기업인수합병준칙」이라 한다)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영업권과 부의영업권은 합병뿐만 아니라 지분의 일부취득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회계기준은 영업권 및 부의영업권과 관련하여 첫째, 영업권 및 부의영업권의 성격과 금액 및 그 이익 또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둘째, 미래의 이익 또는 비용과 관련 없는 영업권 및 부의영업권의 성격과 금액 및 상각·환입기간, 셋째, 영업권과 부의영업권의 변동내용 등을 주석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결감사보고서의 주석과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영업권 및 부의영업권 인식과 상각 및 환입을 실시하는 기업의 특성과 회계처리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국제회계기준(IFRS 3, Business Combinations)에서는 피매수회사의 식별가능순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이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취득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식별가능순자산의 공정가치와 매수원가를 재검토한다. 재검토후에도 부의영업권이 발생하면 염가취득으로 보아 취득시의 이익으로 인식한다.¹⁾ 이는 취득원가주의와 실현주의 개념에 따라 부의영업권 인식 후 환입과정을 통

해 이익으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행 회계기준과는 상반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업인수 및 합병 등 기업결합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 개정이전과 이후의 영업권 개념 및 회계처리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합병차익과 부의영업권 개념 차이에 대해 알아본다. 3장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적 배경과 연구목적을 설명한다. 4장에서 연구의 표본과 함께 영업권과 부의영업권에 관련된 회계처리 실태를 분석하고 실제사례를 바탕으로 부의영업권이 보고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연구의 결론과 더불어 표본과 구성에서 비롯된 한계점을 언급하고 향후 본 연구와 관련된 확장연구의 범위를 제안하기로 한다.

II. 영업권, 부의영업권 및 합병차익 회계 기준 검토

2.1 영업권 관련 회계기준

「기업인수합병준칙」에서 (매수)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정액 상각하고, 부의영업권은 무형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일정 기간에 이익으로 환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무형자산인 영업권을 유형자산

1) 2001년 개정 전 미국회계기준(APB Opinion No.16)은 피매수회사의 식별가능순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매수회사 지분이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취득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가정 하에 피매수회사의 비유동자산(시장성유가증권에 대한 장기투자 제외)을 비례적으로 감액한다. 만약 이와 같이 감액한 비유동자산의 가액이 0이 되면 그 잔액을 부의영업권으로 인식한 후 4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체계적으로 환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부의영업권을 인식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 우리나라에서는 비화폐성자산에서 발생한 부의영업권을 인식한 후 환입하지만, 미국은 비유동자산과 상계한 후 초과액(계산상의 부의영업권이 비유동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한 부분)만 부의영업권으로 인식한다는 큰 차이가 있다.

과 같이 상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고, 급기야 2001년 미국재무회계기준위원회는 영업권을 상각하지 않고 손상처리하는 재무회계기준서(SFAS) 제142호를 발표하였다. 2004년 3월 공표된 국제회계기준(IFRS) 제3호에서도 미국과 같은 기준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회계기준의 국제적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회계기준위원회도 외부에 공표하지 않았을 뿐 기업결합에 따른 영업권과 부의영업권의 회계처리를 국제회계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통과시킨바 있다. 우리나라가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채택하기로 함에 따라 영업권인식 후 상각대신 손상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듯 영업권과 관련된 새로운 기준제정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권 인식 및 상각과 관련하여 기업이 현행 회계기준의 맹점을 기회주의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1999년에 L산전은 계열회사인 L금속을 흡수합병하면서 1조 2775억원의 영업권을 기록했으나 L금속의 주력사업부를 매각하면서 관련 영업권을 충분히 상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1조원을 손실처리해야 하는데 L기업은 4475억원만 상각해 이익을 부풀렸다'고 판정한 바 있다(동아일보, 2002. 6.27).

2.2 부의영업권 및 합병차익 관련 회계기준

부의영업권이란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취득자의 지분이 사업결합원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의미하며 취득이익의 성격을 갖는다.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부의영업권은 첫째,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손실이나 비

용과 관련된 부의영업권과 둘째, 기타의 부의영업권으로 구분한다. 인식 과정에서 피매수회사의 식별가능한 자산이 과대 계상되거나 식별가능한 부채가 과소 계상되면 부의영업권이 발생할 수 있다. 미래 기대 손실이나 비용과 관련된 부의영업권은 매수계약서상에 명시된 경우에 인정하며, 인식 후 매수계약서상 명시된 미래의 손실이나 비용의 경우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에서 일시에 이익으로 환입한다. 이에 반해, 기타의 부의영업권은 피매수회사의 식별가능한 비회폐성자산의 공정가치 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비회폐성자산 중 상각가능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환입한다. 또한 식별가능한 비회폐성자산의 공정가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염가취득으로 보아 매수일에 특별이익으로 인식한다.

피매수회사의 순자산이 식별가능하고 공정가치 평가가 적절히 수행되었다면, 부의영업권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부의영업권을 인식하기 전에 취득자는 먼저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우발부채의 인식과 측정 및 기업결합원가를 재평가해야 한다. 재평가 이후에도 남는 초과분(부의영업권으로 인식될 부분)은 다음의 요소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 (가) 재평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오류
- (나)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측정하는데 있어서의 공정가치가 아닌 금액을 공정가치로 보아 기업결합원가의 배분목적으로 처리하는 실무상의 관행 또는 회계기준의 미비
- (다) 염가매수

이러한 초과분은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인식할 수 있다. 첫째,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배분된 가치를 감소시키는 방법(미국회계기준의

입장), 둘째, 이연이익으로 인식하는 방법(현행 우리나라 준칙과 유사한 방법), 셋째, 즉시 손익으로 인식하는 방법(국제회계기준의 입장)이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부채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의영업권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짓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초과액’이라 함)을 당기에 전액 이익으로 인식하는 회계기준을 제정하였다. 현행 미국회계기준(SFAS No.141)은 초과액을 식별가능한 비회폐성자산에서 비례감액하고도 남는 초과액을 기업결합이 완료된 시기의 이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회계기준 하에서는 부의영업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엄격한 공정가치의 적용 후 발생한 부의영업권은 당기이익으로 즉시 인식되므로 부의영업권을 인식하지 않게 된다.

현행 부의영업권 계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기업인수합병준칙」은 2000년 1월 1일 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기업결합에 대해 적용해왔다. 종전 기준인 합병회계준칙 하에서는 합병에 의한 기업결합으로 인해 발생한 부의영업권에 해당되었던 합병차익을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인식하였었다.

합병차익을 인식한 기업에 비해 2000년 이후 부의영업권을 인식한 기업 수가 현저히 증가한 것은 합병차익보다 부의영업권을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정가치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오히려 부의영업권은 발생할 확률이 아주 적다. 이를 기업의 이익관리 관점에서 본다면 합병차익은 자본계정에 인식됨으로써 대차대조표 계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의영업권의 경우 무형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인식되고 이후 환입과정에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과 관련이 있다. 즉,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계정

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의도적으로 부의영업권 인식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부의영업권 인식을 허용하지 않는 다른 국가의 상황과 달리 부의영업권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주식과 채무제표상에서 실제로 부의영업권을 인식한 기업이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환입을 실시하고 있으며 당기 환입액이 보고이익에 미치는 재정적인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III.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특징

3.1 영업권 및 부의영업권 관련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영업권은 초과수익창출 능력에 대한 대가로서 합병 등을 통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인식할 수 있다. 또한, 매수기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식별이 곤란하여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을 개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영업권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으로 통칭되는 고객충성도 등은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가능한 자산도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즉, 일반적으로 고객충성도, 고정고객, 시장점유율 등을 통하여 영업권이 내부적으로 창출된다고 보고 있으나 자산의 특성인 미래 경제적효익을 구체화하거나,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영업권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영업권은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무형자산 중의 무형자산'이라고 부른다.

기존의 영업권과 관련한 연구는 대부분 측정과 평가(Hennings et al. 2000, Herz et al. 2001, Lander and Reinstein 2003, 오준환 2003), 가치관련성(Jennings et al. 1996, McCarthy et al. 1995, 정혜영·조성인 2004, 윤재원 등 2006) 등에 대한 연구들이 주류였으며 영업권의 회계이사 결정에 대해 검토한 연구는 거의 없다. 더군다나 영업권 및 부의영업권이 기회주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들의 회계처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1999년 사업결합에 관한 회계기준의 공개초안이 공표된 이후 영업권상각비의 유용성에 대한 몇몇 연구가 수행되었다. Moehrle et al. (2001)은 영업권상각비를 제외한 주당경상손익과 영업권상각비 차감 후 보고된 주당경상손익의 정보효과를 비교하였는데 양자 간의 상대적 유용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Jennings et al. (1996) 또한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영업권상각비를 제외한 주당경상손익과 영업권상각비 차감 후 보고된 주당경상손익의 상대적 주가관련성을 연구하였는데, 영업권상각비를 제외한 주당경상손익의 상대적 주가관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익정보만으로 주가를 평가함에 있어 영업권상각비는 가치평가에 유용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국내 윤재원 등(2006)의 연구는 시장참여자들이 영업권상각비와 부의영업권을 어떻게 주가에 반영시키는지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들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영업권상각비는 주식가치와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영업권 상각은 비용으로 인식되므로 투자자들이 회계정보에 기계적으로 반응한다면 시장반응은 음(-)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결과는 현재 시장참여자들은 영업권상각을 실질적인 비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로써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arton and Simko(2002)는 대차대조표는 그 동안의 회계선택의 누적지표라고 보고 이익관리의 정도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재무제표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들은 대차대조표에 순자산의 큰 변화를 보고한 기업들의 특성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영업권 인식이 변화의 주원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Hennings and Shaw (2003)는 영업권상각기간을 기회주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기업들이 이익변화와 미래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영업권 상각연수를 결정한다고 보고하였다. Jordan(2004)은 영업권감액을 통한 이익감소를 확인한 바 있다. 즉, 영업권상각과정에서 기업의 보고이익을 낮추고자 하는 의도가 크다면 연결대상기업간의 기회주의적인 기업결합이 이익관리의 수단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1999년에 「기업인수합병준칙」이 개정된 이래 우리나라 기업결합거래의 현황을 연구하거나 동 준칙으로 인한 회계의사결정에 대해 분석한 연구가 두 편에 불과하다. 그 중 하나인 신현걸(2004)의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기업결합의 일부인 합병거래의 현황을 파악하고, 합병관련 회계기준과 법인세법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합병거래의 대부분이 매수법으로 회계처리 되었고, 지배·종속회사 간의 합병이 16% 정도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의 연구결과

에 따르면 매수법 합병의 54% 정도가 영업권을 인식하였고 22% 정도가 부의영업권을 인식하였다. 합병관련 주식공시사항 중 부의영업권의 환입에 대한 공시가 대체로 불충분하게 이루어졌으며 몇몇 합병거래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한 사항도 발견되었다. 그는 우리나라 합병회계기준의 문제점으로 복잡하고 비논리적인 부의영업권 환입, 피매수회사 주식의 평가시 공정가치가 아닌 장부금액 평가, 지배·종속회사간의 합병시 장부금액으로 승계하는 회계처리 등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한편, Kim and Yoon(2008)은 기업들이 보고이익과 부채비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업결합을 기회주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업결합이 보고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기회주의적으로 활용되지만 부채비율의 개선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영업권 및 부의영업권의 회계기준, 회계논점, 기업결합의 발생원천, 영업권 및 부의영업권의 규모 및 건수, 영업권 및 부의영업권의 상각 및 환입형태 및 체계성 여부, 영업권 및 부의영업권이 보고이익에 미치는 영향, 주식공시사항 등의 회계처리 실태를 심도 있게 검토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구분된다.

3.2 부의영업권에 대한 회계논점

부의영업권 환입과 관련하여 2002년 3월 14일 (한국경제신문, 2002. 3. 15)에 발표된 13개사의 분식회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는 시장의 큰 관심을 끌었다. 그 중 D제강과 D건설 등은 1999년과 2000년 각각 349억원과 232억원을 일시에 환입시켜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거나 적자폭을 감소시킨 것으로 드러나 금융감독원은 중징계 방침

을 내세웠는데 관련기업은 회계기준 적용의 모호성을 들어 강하게 반발하였다. 기업측에서는 부의영업권은 20년 이내의 기간 중 합리적인 기간에 환입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일시에 환입하여도 합리적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부의영업권을 인식함에 있어 회계기준과는 달리 공정가치로 평가하지도 않고 장부금액과 취득금액 차이로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시에 환입함으로써 보고이익에 큰 영향을 미쳐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H그룹은 계열사 주식을 대거 매입하여 발생시킨 부의영업권을 일시에 이익으로 계산함으로써 H그룹의 부채비율을 대거 축소시켰다. 이 과정에서 H사는 H석유화학 주식을, 그리고 H석유화학은 H유통주식을, H유통은 H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함으로써 부의영업권을 발생시키고 이를 이익으로 계산하였다. 이를 통해 H그룹은 2001년의 부채비율을 189%(부의영업권환입 전 부채비율 232%)로 낮추었다(프레시안, 2003. 2. 24).

부의영업권은 기업결합원가가 피매수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에 대한 매수자의 지분보다 낮기 때문에 매수자가 기업결합으로 취득이익을 향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의영업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주요한 회계논점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과연 기업결합으로 취득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한가? 피매수회사의 순자산을 공정가치보다 낮게 취득한 경우에 매수자에게 부의영업권이 발생할 것이다. 국제회계기준(IFRS 3)에서는 공정가치를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적인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공정가치는 독립적인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독립적인 당사자

사이의 거래가 아니면 공정가치가 아닌 가격으로 교환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계열회사 사이에 기업결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부의영업권 인식은 계열회사 간의 거래라는 독립적이지 못한 당사자 사이의 거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자주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둘째, 계열회사 사이의 기업결합은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거래가 많을 수 있다. 즉, 지배주주의 공동지배하에 있는 계열회사 간의 기업결합을 이용하여 마치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지배주주의 편의에 따라 영업권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부의영업권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다. 계열회사 간 기업결합에서는 기업결합의 대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그들 입장에서 굳이 공정가치를 사용할 이유도 없고 실익도 없다. 기업결합거래에서 공정가치의 결정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 및 비용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열회사 간 기업결합에서는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기업결합대가를 결정함으로써 지배주주의 편의에 따라 영업권 또는 부의영업권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대장부가액비율(PBR, price-to-book value ratio)은 1 미만인 경우가 허다하였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KIS-VALUE에 수록된 제조업 상장회사의 PBR 평균은 0.68부터 0.88 사이의 값을 보여 5년 연속 1 미만이었으며, 2005년과 2006년은 주가의 급격한 상승 덕택으로 1.35 전후로 비로소 1 보다 커졌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2000년부터 2004년 사이에는 계열기업은 마음만 먹으면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인 주가보다 높은 피매수회사를 선택하여 부의영업권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및 회계관행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회계납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이 보다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하고, 경영자 및 회계감사인 이 이를 자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회계환경이 정비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셋째, 취득이익인 부의영업권을 당기손익에 인식하는 시점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취득원가주의는 실현주의와 짝을 이루고, 공정가치 평가는 미실현손익의 인식과 짝을 이룬다. 공정가치 개념에 근거한 국제회계기준은 부의영업권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공정가치의 재평가를 먼저 강제로 실시하고, 엄격한 공정가치로 재평가한 후에도 부의영업권이 발생하면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취득원가주의와는 달리 엄격한 공정가치 측정을 실시하되 취득이익인 부의영업권을 즉시 이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회계기준도 비유동자산의 공정가치가 잘못 평가되었을 것이라고 간주하고 비유동자산의 공정가치를 비례적으로 감소시켜서, 비유동자산의 공정가치가 0 이 되기도 잔액이 발생하면 그 부분만을 부의영업권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 회계기준은 부의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고 향후 비화폐성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동안 환입을 하게 되므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부의영업권을 환입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미국회계기준은 부의영업권 발생액만큼 비유동자산을 감소시킴으로써 감가상각비 자체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즉, 동일한 부의영업권이 발생하더라도 그 금액이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 미국회계기준은 부의영업권만큼 감액처리된 자산의 감가상각을 통하여 체계적 배분과정을 따라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의영업권을 별도로 인식함에 따라 자의적으로 손익에 반영할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회계기준은 공정가치로 순자산 을 측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장부금액을 공정 가치의 대용치로 인정하는 실무의 관행과 계열회사 간의 거래라는 관행이 결합하여 부의영업권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인식되고 있다. 부의영업권은 이연 하였다가 이를 체계적으로 환입하여 이익에 반영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또 부의영업권 인식 후에는 20년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 하여 이를 재량적으로 환입하여 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회계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3.3 본 연구의 특징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합병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결합을 대상으로 영업권과 부의영업권 인식 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공정거래위원회가 2005년 및 2006년 실질적 기업결합 동향 및 특징을 보고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총 1,021건의 실질적 기업결합 중에서 주식 취득을 통한 기업결합이 650건(63.7%)이며, 합병 이나 영업양수를 통한 기업결합은 각각 224건 (21.9%) 및 147건(14.4%)을 차지하고 있다.²⁾

주식취득은 합병처럼 복수의 기업을 통합하는 데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피하면서도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효과적으로 획득하는 것으로써 기업결

합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주식취득 은 기업결합의 한 방법으로써 주식인수과정에서 영 업권과 부의영업권의 발생이 가능한 거래이다. 또한 『연결재무제표준칙』에 의하면 지배회사는 주식 취득을 통해 지배권을 획득한 연결대상 종속회사와 의 투자제거차액을 영업권 또는 부의영업권으로 인 식한다.

지배주주는 기회주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본인이 통제하기 쉬운 계열회사나 관계회사와의 결합을 통하여 지배주주의 사적 효용을 추구할 수 있는데 이 때 영업권과 부의영업권이 자의적으로 이용될 가능 성이 있다(윤재원 등 2006). 보도에 따르면 상업적 실질이 없는 장부상의 이익조정을 통한 보고이 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부의영업권을 종종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예컨대, 2004년 S사는 전년대비 분기 영업이익이 19.8% 감소하였으나, 부의영업권환입 등을 통한 영업외이익의 증가로 전 년 동기 대비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10.7% 및 47.2%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머니투데이, 2004. 8. 31).

이렇듯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영업권상각과 부의영 업권환입은 보고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영업권과 부의영업권을 야기하는 기업결합(특히 합병 및 영업양수)은 다른 이익조정

<표 1> 실질적 기업결합의 수단별 추이 (단위: 건, %)

연도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소계
2005	295(61.7)	110(23.0)	73(15.3)	478(100.0)
2006	355(65.4)	114(21.0)	74(13.6)	543(100.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06년 기업결합 동향 및 특징>

2)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임원겸임 및 회사설립도 기업결합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2005년과 2006년에 임원겸임은 279건 및 회사설립은 102건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수단에 비해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복잡한 거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결합방법을 통해 이익 조정을 실시하는 기업들의 존재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들 기업의 회계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연결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영업권이나 부의영업권을 실제 인식한 회사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회계처리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IV. 표본선정 및 회계처리실태 분석결과

4.1 표본선정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범위를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으로 제한한다.

첫째, 1995년부터 2006년 말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제조업

둘째, 한국신용평가(주)의 KIS-VALUE에서 연결재무제표 관련 자료수집이 가능한 기업

첫째 기준은 산업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한 기준

이며 연결재무제표 자료는 한국신용평가(주)의 KIS-VALUE에서 구하였다.

영업권과 부의영업권은 기업의 인수·합병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만 인식할 수 있다. 합병의 경우에는 영업권과 부의영업권이 개별재무제표에 표시된다. 그러나 연결대상 회사 간 합병을 한 경우 영업권이 개별재무제표에 기록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인수(주식취득)에 비교할 때 합병의 발생건수가 매우 적었다. 단, 「연결재무제표준칙」에 의하면 회계연도 중에 연결대상회사 간에 합병을 한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에 합병이 아니라 추가로 지분을 취득한 것처럼 회계처리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계열회사 간에 합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결재무제표상의 영업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³⁾ 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에서 영업권과 부의영업권 자료를 추출하고, 연결감사보고서와 함께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였다.

우선, 2000년부터 2006년의 기간에 연도별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 수 및 결측치를 제거한 후 최종 표본은 <표 2>와 같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하고 있는 기업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 및 표본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280	291	312	329	349	364	385	2,310
연구의 표본	226	253	274	288	305	328	340	2,014

3) 합병에 의한 영업권과 부의영업권 발생은 개별재무제표에 인식한다.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영업권과 부의영업권 연도별 인식액 비교결과 합병에 의한 영업권과 부의영업권이 개별재무제표에 인식된 후 연결재무제표에 합산되어 기록된 기업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었다. 또한 중속회사의 합병에 의한 영업권과 부의영업권 발생을 개별재무제표에 기록하지 않고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바로 인식한 기업도 있었다. 따라서 개별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합병에 의한 영업권과 부의영업권 인식을 분석하면 대응에 의한 오류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하여 연결재무제표 영업권과 부의영업권 계정을 사용하였다.

4.2 영업권과 부의영업권 인식건수

여기에서는 영업권과 부의영업권 회계처리 실태를 알아본다. 이를 위해 기간별 영업권과 부의영업권 인식건수, 주식공시의 충실성과 영업권 상각 및 부의영업권 환입의 체계성 여부를 기술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실무에서 회계기준이 어떻게 준수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영업권의 연도별 인식건수와 평균금액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영업권 인식건수는 2000년에 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이후 급격히 감소하다가 2004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영업권으로 기록한 금액은 건당 평균 480백만원에서 910백만원 정도의 범위를 보임으

로써 중요성 차원에서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외부 정보이용자들이 이들의 존재를 간과하기 쉬울 수 있다.⁵⁾

기간별로 영업권상각의 중요성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각 기간별로 영업권상각이 실시되고 있는 기업의 빈도와 비율을 살펴보았다.⁶⁾

<표 4>의 패널1은 기간별 영업권상각 실시기업의 빈도와 전체 표본기업 수에 대한 상각기업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회계기준 개정 이전기간(1995-1999)에 비해 2000년 이후에 전체 분석대상 기업 중 영업권 상각을 실시한 기업의 비율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영업권상

<표 3> 영업권 인식건수와 금액 (단위: 건, 백만 원)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건수 ⁴⁾	89	47	49	42	52	58	67	404
평균액	479.7	837.1	742.2	909.8	659.9	673.3	628.5	4930.5

- 4)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영업권 인식기업의 개념은 단순히 영업권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 그 해에 영업권을 새로 인식한 기업 즉, 전기에 영업권이 있었더라도 당기에 영업권을 새로이 인식하여 전기 대비 영업권금액이 증가한 기업만을 표본으로 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KIS-VALUE에서 보여주고 있는 영업권 인식기업의 개념과는 다르며 이들 숫자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힌다.
- 5) <표 1>에 제시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고한 실질적 기업결합의 수와 <표 3> 및 <표 5>에서 영업권 및 부의영업권을 인식한 건수는 같은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 규제의 목적으로 파악한 기업결합의 수이며 비상장기업들을 포함한 수치이다. 이에 반하여 <표 3>과 <표 5>에서 제시된 영업권 및 부의영업권 인식 건수는 KIS-VALUE에서 재무자료가 입수가능한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수치이다.
- 6)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기간을 통제하고, 2000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과 이전의 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영업권상각액의 영향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추가분석으로 1995년부터 2006년까지로 연구기간을 확장하여 실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경제난국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기업이 합병과 분할을 하였다. 또한 종전의 합병회계준칙은 국제회계기준과 미국의 회계기준과의 차이점이 크고 회계이론보다는 상법 또는 세법 등 합병실무를 규제하는 법률에 일치하도록 제정되어 기업결합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결국 기업결합을 저해하고 나아가서 기업의 재무정보를 왜곡시켜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98년 12월 개정된 상법에서는 분할 및 분할합병을 도입하였으며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일정요건을 충족시키는 분할 및 분할합병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분할 및 분할합병이 입법화됨에 따라 상법과 법인세법을 지원하고 기업회계처리상에 나타나는 분할·합병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999년 3월 기업 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종전의 합병회계준칙의 명칭을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으로 변경한 것은 상법상 합병뿐만 아니라 기업인수·영업양수도 등 모든 형태의 기업결합거래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행 '기업인수 및 합병 등 기업결합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은 2000년 1월 1일 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기업결합에 대해 적용해왔다. 1995년부터 1999년 말까지의 영업권 인식 건수와 금액에 비해 2000년 이후 영업권 인식 건수와 금액이 현저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0년부터 합병뿐만 아니라 주식인수 등 모든 기업결합 형태에서 영업권 인식을 허용한데 기인한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각 실시 기업의 비율은 전체 표본 중 24.4%인 반면 2000년 이후에는 36.4%의 기업이 영업권상각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각기업 비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한 수준으로서 z통계량이 무려 -6.897에 이른다.

〈표 4〉의 패널2는 매출액에서 영업권상각금액⁷⁾이 차지하는 비율의 기간별 차이를 요약하고 있다. 외환위기가 기간과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업인수합병준칙』 개정 전후기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1998년까지의 기간과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기간별로 매출액대비 영업권상각금액을 조사하고 통제기간과의 영업권상각액 평균의 차이비교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회계기준 개정 이전기간에 비해 2000년 이후기간에 매출액에서 영업권상각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1995년부터 1998년 기간 동안의 평균은 0.06%,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평균은 0.07%정도인 반면, 외환위기 기간 이후인 1999년부터의 비중은 0.27%로 나타났으며 회계기준 개정이후인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매출액대비 영업권상각액 비중은 0.28%로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전과 외환위기 후의 영업권상각액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t: -4.172)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기업결합 거래에 관련한 회계기준 개정기간 이전인 1999년까지의 기간과 2000년 이후 기간과의 구분에 의한 차이(t: -4.372) 또한 큰 의미를 보이고 있다.

한편, 1995년~1999년 기간(합병차익 인식기간)과

〈표 4〉 기간별 영업권 상각 기업의 비율 및 영업권 상각 비중

패널 1: 기간별 영업권상각 기업의 비율

기간	1995-1999	2000-2006	비율차이(z값) (1995-1999 vs. 2000-2006)
전체 표본수	892	2,014	
영업권상각기업수	218	733	-6.897
상각기업비율(%)	24.4	36.4	

패널 2: 기간별 영업권상각 비중

기간 구분	외환위기 전후 비교		회계기준개정 전후 비교	
	1995-1998	1999-2000	1995-1999	2000-2006
표본 수	678	2,228	892	2,014
매출액대비 상각액 비중	0.0006	0.0027	0.0007	0.0028
평균차이(t값)	-4.172		-4.372	

7) 영업권상각비의 비밀관련 보고양식을 통제하기 위하여 영업권의 새로운 인식이 없는 기업들의 경우에 당기 영업권금액에서 전기 영업권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추출하였다. 또한 영업권의 새로운 인식이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 모두 주석을 통해 무형자산상각비를 수작업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여 영업권상각비를 추출하였다.

〈표 5〉 합병차익과 부의영업권 인식건수⁸⁾ (단위: 건, 백만 원)

연도	합병차익(1995-1999)					부의영업권(2000-2006)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건수	6	4	8	7	18	60	38	31	21	24	29	21
평균액	82.0	12.4	50.7	43.2	62.4	180.6	373.0	432.9	1,053	792.8	749.5	1,144

2000년~2006년 기간(부의영업권 인식기간)의 기업 결합 후 보고상황을 살펴보면 〈표 5〉와 같이 1999년까지 합병차익을 인식한 기업에 비해 2000년 이후 부의영업권을 인식한 기업 수와 평균금액이 현저히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00년 한 해에 인식한 부의영업권 인식건수는 60개로 그 전 5년간에 걸친 합병차익 인식건수 43건보다 훨씬 많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0년 이후 부의영업권이 급증한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합병차익보다 부의영업권을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즉, 합병뿐만 아니라 주식인수 등 모든 기업결합 형태에서 부의영업권 인식을 허용한데 기인한 현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2000년부터 시행된 「연결재무제표준칙」에 의하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시 투자계정과 자본계정의 상계과정에서 지배권획득일(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날) 현재 종속회사의 자산·부채의 공정가치에 대한 지배회사의 지분과 지배회사의 투자계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차액(투자제거차액)을 영업권 또는 부의영업권으로 인식한다.⁹⁾

둘째, 기업결합의 대부분이 계열회사간의 거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정가치 평가를 통한 매수

대가의 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부금액을 이용하는 실무상의 관행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합병차익은 자본잉여금에 인식되어 대차대조표에만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의영업권의 경우 무형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인식되고 이후 환입과정에서 보고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의영업권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며, 이익증가를 선호하는 계열회사들이 기업결합을 통하여 부의영업권을 합법적인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기업인수 합병준칙」이 적용된 2000년에 인식건수가 전년 대비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회계처리 기준 변경발표에 따른 기업의 즉각적인 반응을 엿볼 수 있다.

4.3 영업권과 부의영업권 관련 주식공시상황

연결재무제표에 영업권이 인식된 기업들의 영업권 관련사항 주식공시 형태를 살펴보면 〈표 6〉의 윗부분과 같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연결재무제표에 영업권을 인식한 404개 기업 중 금융감독원에 연결감사보고서를 보고한 기업은 368개이다. 이 중 주식에서 밝히고 있는 영업권의 발생원인은

8) 합병차익의 인식은 개별재무제표 작성주체에게 해당되는 반면, 부의영업권은 연결재무제표작성주체(지배기업)에게 해당되는 계정이므로 부의영업권의 실질적인 인식비용은 더 높을 것이다.

9) 다만, 지배권획득일 이후 추가 주식취득 시에는 주식취득일을 기준으로 상계제거하며 이때 투자계정과 이에 대응하는 자본계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차액은 연결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주로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주식취득으로 인한 투자제거차액으로서, 278개(82.5%) 기업이 이와 같이 보고하고 있다. 그 외 합병이나 영업양수로 인한 영업권은 38건(11.3%)이 관찰되었다. 또한, 31개 기업(8.4%)은 연결재무제표에 영업권을 인식하고도 연결감사보고서 주식에 영업권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즉, 주식에 영업권에 대한 언급을 한 기업은 총 337개(91.6%)이고 그 중 당기 영업권 인식액을 공시한 기업은 263개(78.0%), 당기 상각액을 공시한 기업은 254개(75.4%), 당기 중 영업권 변동내역을 공시한 기업은 233개(69.1%)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영업권 관련 주식공시는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영업권 언급 기업 337개 중 305개 기업(90.5%)은 연결감사보고서의 주식에 피매수회사의 계열여부를 보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식의 기업명 등을 통해 영업권 발생거래의 피매수회사가 직전 연도에 지배회사의 계열사임이 간접적으로 확인되는 기업자료는 68개(20.2%)이다. 또한 영업권의 82.5%가 연결대상기업 간의 투자제거차액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계열회사 간 기업결합에서 영업권이 많이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식에 영업권 상각기간을 명시한 기업은 237개로 영업권 관련 주식을 공시한 전체기업의 70.3%에 지나지 않았다.

〈표 6〉의 아랫부분은 연결재무제표에 부의영업권을 인식한 기업들의 연결감사보고서 상의 주식공시 형태를 요약한 결과이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연결재무제표에 부의영업권을 인식한 223개 기업 중 160개(71.7%) 기업만이 금융감독원에 연결감

사보고서를 보고하였다. 이 중 주식에서 밝히고 있는 부의영업권의 발생원인은 주로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주식취득으로 인한 투자제거차액이 134개(86.5%)로 나타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 외 합병이나 매출채권의 전환으로 인한 부의영업권은 12건(7.7%)이 관찰되었다. 또한, 5개 기업은 연결재무제표에 부의영업권을 인식하고도 연결감사보고서 주식에 부의영업권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즉, 주식에 부의영업권에 대한 언급을 한 기업은 총 155개이고 그 중 당기 부의영업권 인식액을 공시한 기업은 112개(72.3%), 당기환입액을 공시한 기업은 109개(70.3%), 당기 중 부의영업권 변동내역을 공시한 기업은 95개(61.3%)에 지나지 않았다.

기업결합에 대한 의사결정은 기업 내의 지배주주의 역할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배주주의 권력행사는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이 비교적 용이하다. 따라서 정상적인 거래의 산물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부의영업권은 영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열회사와의 기업결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¹⁰⁾ 주식을 통해 부의영업권 발생거래의 피매수회사가 직전연도에 지배회사의 계열회사임을 알 수 있는 기업자료는 93개로 주식공시 기업의 60%에 해당한다. 이는 패널 1의 영업권을 발생시키는 계열회사 간의 결합비용(20.2%) 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한편, 비계열회사를 통해 부의영업권을 발생시켰다고 명확히 보고한 기업은 한 개 기업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부의영업권을 인식하기 위해 계열회사 간 기업결합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연결감사보고서

10)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결재무제표에 부의영업권을 인식한 기업들을 연도별로 확인하여 해당기업의 해당연도 연결감사보고서의 주석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부의영업권을 인식한 기업결합거래에 있어서 피매수기업이 정확하게 보고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매수회사와 피매수회사의 계열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곤란하였다.

에 부의영업권을 언급한 155개 중 61개(39.4%) 기업은 연결감사보고서의 주석을 통해서도 피매수 회사의 계열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

연결감사보고서 주석에 부의영업권 환입기간을 명시한 기업은 83개로 부의영업권 관련 주석을 공시한 전체기업의 53.5%에 지나지 않았다. 현행 회계처리기준은 부의영업권과 관련하여 첫째, 미래의 손실 또는 비용과 관련된 부의영업권의 성격과 금액 및 그 손실 또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둘째, 미래의 손실 또는 비용과 관련 없는 부의영업권(기타 부의영업권)의 성격과 금액 및 환입기간, 셋째, 부의영업권의 변동내용 등을 재무제표의 주석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표 6>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연결감사보고서에는 부의영업권과 관련하여 주석공시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영업권 관련 주석공시형태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충실정도가 훨씬 낮다는 것을 각 항목별 공시비율을 통해 관찰할 수 있다.

현행 회계기준은 부의영업권을 1)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또는 손실과 관련된 부의영업권과 2) 기타의 부의영업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들을 구분하여 보고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미래의 손실 또는 비용과 관련된 부의영업권이 없다는 것인지 부의영업권을

두 가지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이는 부의영업권 관련 회계처리기준이 실무에서 잘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4.4 주석과 재무제표 상 상각 및 환입기간 비교

E기업은 2004년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의영업권에 대하여 주석에는 19년의 가중평균내용연수를 기록한 반면, 실제로는 5년에 걸쳐 환입하여 제재를 받은 바 있다(아이뉴스, 2006. 9. 6). 이와 관련하여 주석에 보고된 영업권 및 부의영업권 관련 공시사항의 충실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주석공시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상의 실질적인 상각액과 환입액을 검토하여 비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실제 기업들의 상각 및 환입기간 형태를 살펴보고, <표 7>에 이를 보고하였다.

우선, 영업권을 인식한 후 가중평균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주석에 보고한 상각기간의 형태를 살펴보면 <표 7>의 2-3열과 같다. 상각기간을 주석에 보고한 기업은 전체 주석확인 가능 기업 337개 중 237개(70.3%)이고 100개(29.7%) 기업은 상각기간을 주석에 명시하지 않았다. 237개 기업의 상각기간 범위는 즉시 상각부터 최장 40년 상각까지 다양하다. <표 7>에 의하면, 영업권 상각에 대해 보고한 기업 중 176개(52.2%) 기업이 5년의 가중평균내

<표 6> 영업권과 부의영업권 관련사항의 주석공시형태

구분		합계	발생원천			주석공시사항			
			투자제거차액	합병 등	계열거래	인식액	상각액	변동내역	상각기간
영업권	기업수	337	278	38	68	263	254	233	237
	비율(%)	100	82.5	11.3	20.2	78.0	75.4	69.1	70.3
부의 영업권	기업수	155	134	12	93	112	109	95	83
	비율(%)	100	86.5	7.7	60.0	72.3	70.3	61.3	53.5

〈표 7〉 영업권 상각기간의 형태

상각 기간	연결감사보고서 주식상 영업권 상각기간		연결재무제표상 영업권 상각기간		정액법 사용기업 ¹¹⁾ 의 영업권 상각기간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1~4	8	2.4	134	50.2	35	79.5
5	176	52.2	24	9.0	4	9.1
6~9	2	0.6	15	5.6	2	4.5
10	16	4.7	1	0.4	0	0.0
11~19	3	0.9	3	1.1	2	4.5
20	26	7.7	7	2.6	1	2.3
20초과	1	0.3	1	0.4	0	0.0
기타	5 ¹²⁾	1.5	82 ¹³⁾	30.7	0	0.0
미기록	100	29.7	0	0.0	0	0.0
계	337	100.0	267	100.0	44	100.0

용연수동안 영업권 상각을 실시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가중평균내용연수를 「기업인수합병준칙」에서 제시하는 최장기간인 20년으로 보고하고 있는 기업은 26개로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표 7〉의 4-5열은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영업권 상각기간¹⁴⁾ 형태를 제시한 것이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최소한 한번이라도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인 기업은 2006년 기준 419개이다. 그 중 연구기간 내에 영업권 인식이 있었던 기업은 267개(63.7%)로 조사되었다.

우려한 것처럼, 재무제표 상 영업권 상각기간의

형태는 주식에 보고하고 있는 상각기간의 형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상각기간이 1~5년인 기업이 158개로서 전체 영업권인식기업(267개)의 59.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4년 이내의 상각기간을 갖는 표본 수의 비중이 50.2%로서 자산성에 대한 의문이 큰 영업권을 가능한 한 단기에 상각하고자 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주식에 공시한 상각기간을 바탕으로 도출한 가중평균내용연수는 전체기업의 평균이 7.2년(=1,666가중연수/232개 보고기업¹⁵⁾)이다. 한편, 재무제표상의 상각기간을 바탕으로 한 가중평균내용연수는

11) 주식을 확인하여 지분의 변동, 연결범위의 변화, 매각 및 감액 등의 다른 요소가 없는 기업들 중 재무제표상 상각액을 조사하였다. 즉, 이와 같은 요소가 없는 기업들의 재무제표상의 영업권 변화를 조사하여 상각액을 구하였다.
 12) 영업권취득 거래가 두 건 이상인 기업으로 각각 영업권에 대한 상각기간이 다르거나, 특정기간이 아닌 범위로 주어진 경우이다.
 13) 2006년말 현재 상각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현재까지의 상각형태로는 그 기간을 추정하기 곤란한 경우이다.
 14) 다기간 동안 연결재무제표의 영업권 계정을 관찰하여 처음 영업권이 인식되면서부터 모두 소멸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실질상각기간을 직접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확인이 가능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식에서 확인할 수 있는 표본수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힌다. 또한 주식에 보고한 상각기간과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실제로 영업권을 상각한 기간이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상 주식에 보고한 상각기간의 통계와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직접 확인한 상각기간의 통계수치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5) 가중평균내용연수 산정시 필요한 표본은 상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이다. 따라서 〈표 7〉의 연결감사보고서 전체표본 337개 중 상각기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곤란한 기타 5개 기업과 미기록 100개 기업을 제외한 232개 기업을 보고기업으로 하여 산정하였다.

전체기업의 평균이 4.3년(=793 가중연수/185개 보고기업)이다. 따라서 주식과 재무제표상의 가중 평균내용연수는 2.9년의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과반수의 기업이 주식 상에는 5년을 상각 기간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년에서 5년의 기간이 비교적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1년에서 4년에 걸쳐 생각하는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식공시의 불성실성 및 형식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상각기간을 주식에 명시조차 하지 않고 있는 기업의 비율이 많을뿐만 아니라 가중평균내용연수의 설정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영업권 상각기간의 활용이 보고이익 조정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또한 재무제표 상의 영업권계정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영업권 인식 후 정액법으로 상각을 실시한 기업의 수는 44개(16.5%)에 불과했다. 정액법으로 영업권상각을 실시한 기업들의 상각연수는 <표 7>의 6~7열과 같다.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경우에도 44개 표본 중 88.6%인 39개 기업이 5년 내에 상각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8>은 부의영업권 환입과 관련하여 환입 기간 별 기업수를 요약하고 있다.

부의영업권을 인식한 후 가중평균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연결감사보고서 주식에 보고한 환입기간의 형태를 살펴보면 <표 8>의 2~3열과 같다. 환입기간을 주식에 보고한 기업은 전체 주식확인 가능 기업 155개 중 83개(53.5%)이고 무려 72개(46.5%)

기업은 환입기간을 주식에 명시하지 않았다. 83개 기업의 환입기간 범위는 즉시 환입부터 최장 30년 환입까지 다양하였다. 부의영업권 환입기간을 보고한 기업 중 51개(32.9%) 기업이 5년의 가중평균 내용연수동안 부의영업권 환입을 실시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가중평균내용연수를 20년으로 보고 있는 기업도 12.3%(19개)를 차지하고 있다.

<표 8>의 4~5열은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이 실제로 선택하고 있는 부의영업권 환입기간¹⁶⁾ 형태를 제시한 것이다. 2006년을 기준으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최소한 한번이라도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인 기업 419개 중 연구기간 내에 부의영업권 인식이 있었던 기업은 145개 기업으로 전체표본의 34.6%를 차지하였다.

<표 7>의 영업권 상각기간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재무제표 상 부의영업권 환입기간의 형태는 주식에 보고하는 환입기간의 형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환입기간이 1~5년인 기업이 91개로서 전체 부의영업권 인식기업(145개)의 62.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4년 이내의 환입기간을 갖는 표본 수의 비중이 54.5%로서 보고이익에 양(+의 영향을 주는 부의영업권 환입을 가능한 한 단기에 실시하고자 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주식에 공시한 환입기간을 바탕으로 도출한 가중 평균내용연수는 전체기업의 평균이 9.6년(=797 가중연수/83개 보고기업¹⁷⁾)이다. 반면, 재무제표상의 환입기간을 바탕으로 한 가중평균내용연수는 전체기업의 평균이 5.0년(=574 가중연수/115개 보고기업)으로 주식상의 환입기간과는 상당한 괴리

16) 다기간 동안 연결재무제표의 부의계정을 관찰하여 처음 부의영업권이 인식되면서부터 모두 소멸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확인하여 실질환입기간을 산정하였다.

17) <표 8>의 연결감사보고서 전체표본 155개 중 상각기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곤란한 미기록 72개 기업을 제외한 83개 기업을 보고기업으로 하여 산정하였다.

〈표 8〉 부의영업권 환입기간의 형태

환입 기간	연결감사보고서 주석 상 부의영업권 환입기간		연결재무제표 상 부의영업권 환입기간		정액법 사용기업의 부의영업권 환입기간 ¹⁸⁾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1~4	2	1.3	79	54.5	31	67.4
5	51	32.9	12	8.3	3	6.5
6~9	0	0.0	10	6.9	2	4.3
10	4	2.6	4	2.8	2	4.3
11~19	6	3.9	7	4.8	5	10.9
20	19	12.3	0	0.0	0	0.0
20년초과	1	0.7	3	2.1	3	6.5
기타	0	0.0	30 ¹⁹⁾	20.7	0	0.0
미기록	72	46.5	0	0.0	0	0.0
계	155	100.0	145	100.0	46	100.0

를 보이고 있다.

53개 기업(34.2%)이 주석에서는 5년 또는 그 이내를 환입기간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62.8%의 기업이 1년에서 5년에 걸쳐 비교적 고루 부의영업권을 환입하고 특히 영업권상각과 같이 1년에서 4년에 걸쳐 환입하는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입기간 결정에 따라 환입금액이 달라지므로 이는 기업의 보고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환입기간에 대한 명확한 설정기준이 없으므로 그 분포 또한 기업의 재량에 따라 체계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재무제표 상의 부의영업권계정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부의영업권 인식 후 정액법으로 환입을

실시한 기업의 수는 46개(31.7%)에 불과했다. 해당 기업들의 환입연수는 〈표 8〉의 6-7열과 같다. 정액법으로 환입하는 경우에도 46개 표본의 73.9%인 34개 기업이 5년 내에 환입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5 영업권 상각과 부의영업권 환입의 체계성

영업권과 부의영업권은 인식, 상각 및 환입에 있어서 경영자가 많은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계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보고되는 합병신고서에 의하면 공정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수 관찰되고 있다.²⁰⁾ 더군다나 비화

18) 주석을 확인하여 지분의 변동, 연결범위의 변화, 매각 및 감액 등의 다른 요소가 없는 기업들 중 재무제표상 환입액을 조사하였다. 즉, 이와 같은 요소가 없는 기업들의 재무제표상의 부의영업권 변화를 조사하여 환입액을 구하였다.

19) 2006년 말 현재 환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현재까지의 환입형태로는 그 기간을 추정하기 곤란한 경우이다.

20) 실제로 합병신고서를 살펴보면 평가항목이 없는 기업도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 등에 의해 합병비율 평가가 이루어진 기업들의 평가과정을 보더라도 공정가치가 아닌 장부금액 평가 또는 세부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세법위주의 합병비율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영업권 상각 및 부의영업권 환입의 체계성

패널 1: 영업권 상각의 체계성		
영업권 상각형태	기업 수	비율(%)
전액 즉시상각	38	14.2
정액법	44	16.5
기타 ²¹⁾	71	26.6
상각액의 비체계성: 최대값/최소값	1~10배	88
	10배 초과	26
합계	267	100

패널 2: 부의영업권 환입의 체계성		
부의영업권 환입형태	기업 수	비율(%)
전액 즉시환입	18	12.4
정액법	46	31.7
기타 ²²⁾	19	13.1
환입액의 비체계성: 최대값/최소값	1~10배	41
	10배 초과	21
합계	145	100

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부의영업권은 화폐성자산을 염가로 취득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고 매수일 현재 이미 경제적 효익이 실현된 것으로 간주하여 매수일에 일시 환입한다는 예외규정이 있다. 따라서 영업권 상각과 부의영업권 환입기간은 기업의 의도에 따라 비체계적일 가능성이 많다.

〈표 9〉는 연도별 영업권 상각과 부의영업권 환입액의 체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패널 1에서 정액법 상각은 16.5%이며, 즉시 상각한 기업도 전체기업의 14.2%에 달한다. 한편, 연구대상기간 중 동일한²³⁾ 영업권에 대한 상각을 실시한 기업들의 영업권 상각액

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비율을 검토한 결과 극심한 비체계적 형태를 보이고 있다. 비체계성을 나타내는 상각액 비율은 1.3배부터 크게는 1,615배까지 극단적인 변동을 보이는 기업도 있었다. 정액법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영업권을 상각하거나 부의영업권을 환입하면 이 비율이 1 이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결과는 보고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각액 또는 환입액의 재량적 조정이 실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표 9〉에는 보고하지 않았으나 영업권상각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 267개 중 68개(25.5%) 기업에서는 영업권 인식 후 첫해보다 그 다음연도

21) 영업권을 인식하였으나 상각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서 상각액의 비균등성 비율을 검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2) 부의영업권을 인식하였으나 환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서 환입액의 균등성 비율을 검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3) 영업권에 대한 상각액의 비체계성은 영업권 추가취득이 없는 기간동안의 영업권 즉, 동일한 영업권에 대하여 계산하였다.

에 상각액 규모를 감소시키고 있었다. 이를 통해 일단 첫해에는 상각액을 크게 책정한 후 다음 해부터는 비용의 증가를 야기하는 상각액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보고이익을 조정하려는 기업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표 9〉의 패널 2에서 볼 수 있듯이 부의영업권의 정액법 환입은 31.7%에 불과하며, 즉시 환입한 기업은 전체표본의 12.4% 정도이다. 한편, 연구대상기간 중 부의영업권에 대한 환입을 실시한 기업들 역시 부의영업권 환입액의 최소값 대비 최대값의 비율을 검토한 결과 극심한 비체계적 형태를 보이고 있다. 비체계성을 나타내는 환입액 비율은 1.2배부터 크게는 215배까지 극단적인 변동을 보이고 있었다. 이를 통해 영업권 상각기간뿐만 아니라 보고이익에 양(+)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입액 규모의 재량적인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영업권과 부의영업권은 정액법을 이용하여 상각 및 환입할 것이라는 통념 및 기업회계 기준의 규정과는 상당히 괴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4.6 영업권상각 부의영업권 환입 전 당기순이익에 따른 상각·환입액의 변화

여기에서는 실제로 기업이 영업권 상각액과 부의영업권 환입액을 이용하여 보고이익을 조정하고 있는지를 간단한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기업은 당기 재무상황에 따라 보고이익을 조정할 유인이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영업권 상각과 부의영업권 환입은 그 기간과 상각·환입 금액의 크기가 비체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따른 상각·환입액의 재량적인 변화에 따라 보고이익에 영향을 줄 것이라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표 10〉의 패널 1, 패널 2와 같이 동일한 영업권과 부의영업권에 대한 상각·환입액이 다른 연도에 비해 이상적으로 높은 연도의 당기순이익 자료를 추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전기의 영업권 상각전 및 부의영업권 환입전 당기순이익과의 평균차이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상각·환입기간동안 다른 연도의 상각·환입액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을 상각 또는 환입하는 연도의 기업자료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영업권 상각액과 부의영업권 환입액의 변동크기를 기준으로 자료를 추출하였기 때문에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상각액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 중 다른 기간과 비교하여 상각 및 환입액이 현저히 증가한 기업들을 추출한 후 결측치를 제거한 결과 최종 86개 기업(패널 2의 경우 50개 기업)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패널 1의 분석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연도에 비해 이상적으로 영업권 상각액의 크기가 높은 기간(t)의 영업권 상각전 당기순이익은 전기(t_{-1})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t = 3.2885$)에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기 이전의 영업권 상각전 당기순이익과의 평균비교 결과($t_{-3} \sim t_{-1}$: $t = 4.8345$)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며 그 통계적 유의도는 더욱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사후적으로 해석하면 전기에 비해 당기순이익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해에 기업은 보고이익을 낮추기 위한 이익조정 수단으로 영업권 상각액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패널 2에서 볼 수 있듯이, 부의영업권 환입액이 갑자기 증가한 연도(t)의 환입전 당기순이익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t_{-1}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기 이전의 부의영업권 환입전 당기순이익

〈표 10〉 영업권 상각 및 부의영업권 환입 전 기업의 당기순이익 비교

패널 1: 영업권상각액 증가 전 기업의 당기순이익 비교			
	상각액이 증가한 기간(t)	통제기간	평균차이 t값(유의수준)
영업권상각전 당기순이익 (=NI+GW _A)의 평균	0.0484(n=86)	t ₋₁ (n=86)	0.0224
		t ₋₃ ~t ₋₁ (n=258)	0.0190
			3.2885(0.001)
			4.8345(0.000)
패널 2: 부의영업권 환입액 증가 전 당기순이익 비교			
	환입액이 증가한 기간(t)	통제기간	평균차이 t값(유의수준)
부의영업권환입전 당기순이익	0.0128(n=50)	t ₋₁ (n=50)	0.0291
(=NI-NGW _A)의 평균		t ₋₃ ~t ₋₁ (n=150)	0.0342
			-1.5597(0.123)
			-2.0128(0.048)

과의 평균비교 결과(t₋₃~t₋₁의 평균 : t = -2.0128)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통계적 유의도는 통제기간이 t₋₃까지 확장될수록 더욱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연도에 비해 당기순이익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해에 기업은 보고이익을 높이기 위한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실제로 부의영업권 환입액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와 같이 간단한 차이분석을 통해 기업의 당기순이익 상황에 따라 영업권 상각액과 부의영업권 환입액을 변화시켜 보고이익 수준을 조정하고 있다는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고, 영업권 상각과 부의영업권 환입을 통한 기업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다시금 확인하였다.

4.7 영업권상각 및 부의영업권 환입에 따른 발생액차이

영업권을 상각하면 비용처리가 되지만 부의영업

권을 환입하면 이익이 증가한다. 부의영업권은 20년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을 정해 정액법으로 환입해야한다. 여기서 20년 이내의 합리적인 환입기간이라는 모호한 규정을 이용하여 계열사 간 합병 또는 지분법적용대상기업²⁴⁾ 및 연결대상기업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부의영업권 인식 후 환입기간을 임의로 조정하여 보고이익을 조정할 유인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부의영업권은 환입을 통해 기업의 이익관리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부의영업권 환입금액이 실제로 보고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감안하여 〈표 11〉과 같이 영업권상각과 부의영업권환입 여부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의 재량발생액 형태를 살펴보았다. 환입액의 규모가 중요하다면 부의영업권 환입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보고이익이 높을 것이다.

기업결합으로 인해 영업권과 부의영업권 인식 후 상각과 환입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219

24) 지분법하에서 부의영업권의 환입에 대한 회계처리(실무의견서[2001-5], 금융감독원, 2001.4.20)
지분법회계처리에서 투자제거차액 중 부의영업권성격으로 보는 잔액의 환입은 개념상 본질적 차이가 없는 [기업인수합병준칙]을 준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임.

개로 나타나 총 1,788개²⁵⁾ 자료 중 12.2%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영업권상각은 실시하지 않고 부의 영업권환입만 실시한 기업은 216개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영업권상각만 실시한 기업은 466개로 전체기업-연도 자료의 26.1%정도의 비중이었으며 연구기간 중 영업권상각과 부의영업권환입이 없었던 기업이 전체의 49.6%정도를 차지하였다.

〈표 11〉에 의하면 영업권상각을 실시하고 부의 영업권 환입은 실시하지 않는 기업(Cell 3)의 재량발생액 평균이 다른 통계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Cell 2 vs. Cell 3, $t = 2.0414$; Cell 3 vs. Cell 4, $t = -2.2314$).

부의영업권환입을 실시한 기업과 다른 통계기업들 간의 보고이익과 재량발생액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환입액이 보고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외부 정보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크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Cell

1 vs. Cell 3; Cell 2 vs. Cell 4). 전체기업들 중 부의영업권환입을 실시하는 기업의 수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기업을 표본으로 하는 실증분석 결과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8 부의영업권환입과 관련한 한화그룹 분식회계 사례

실제사례를 통해 부의영업권 인식과 환입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감리지적용 받은 한화그룹의 3개 계열사 분식회계 고발 건을 요약해 보기로 한다.²⁶⁾

1999년 6월 대한생명 인수를 희망한 한화그룹이 금융감독위원회 주관 대한생명 공개입찰에 정식으로 참여한다. 때마침 1999년 7월 24일,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인허가 지침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이 보험, 증권, 금고, 종합금융, 신용카드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부채비율이 200%

〈표 11〉 영업권상각 부의영업권환입 여부에 따른 재량발생액 평균비교

		영업권상각 (n = 685)	영업권미상각(n = 1,103)		차이검증 t값 〈Cell 2 vs. Cell 3〉
					2.0414**
부의영업권환입 (n = 435)	Cell 1 n=219	0.0016	Cell 2 n=216	0.0297	〈Cell 1 vs. Cell 2〉 -1.6156*
부의영업권미환입 (n = 1,353)	Cell 3 n=466	-0.0006	Cell 4 n=887	0.0215	〈Cell 3 vs. Cell 4〉 -2.2314**
차이검증 t값	〈Cell 1 vs. Cell 3〉	0.4610	〈Cell 2 vs. Cell 4〉	0.0642	〈Cell 1 vs. Cell 4〉 -1.7633*

각 셀의 수치는 수정존스모형(Dechow et al., 1995)에 의한 각 집단의 재량발생액의 평균을 의미
***, **, * 은 각각 0.01, 0.05, 0.10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25) 부의영업권환입은 사실상 2001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표 11〉에 관련한 내용은 실증분석을 위하여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전체 제조업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에 따른 전체 제조업 표본 수는 1,788개이다.

26) 이와 관련하여서는 최관(2008)의 사례연구가 있다.

이하, 자기자본이 출자금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다. 따라서 당시 부채비율이 232% 이상에 달했던 한화는 대한생명 입찰에서 탈락위기에 몰리게 된다.²⁷⁾ 이를 타개하기 위해 (주)한화는 한화석유화학 주식을, 한화석유화학은 한화유통 주식을, 한화유통은 한화 주식을 1999년 회계연도말과 2000년 회계연도말에 집중적으로 매입하여 부의영업권을 발생시키고 이를 다음 <표 12>에서와 같이 일시 환입함으로써 이익으로 계산한 바 있다. 한화그룹은 이러한 분식회계를 통해 2001년 부채비율을 188.64%로 축소시켰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02년 3월, 금융감독원은 한화그룹 소속 3개사, 관련 회계법인 3곳 및 공인회계사 3명을 대상으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본 사건에 대해 과거 감리결과 조치에 비하여 상당히 엄중한 징계를 하고 있고, 또한 해당 기업,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모두에게 조치를 내린 점은 주시할 만 한 사항이다. 회사에 내린 징계조치는 유가증권 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이고, 회계법인에게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기업인수합병준칙」에 의한 영업권과 부의영업권의 회계처리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권의 경우 새로운 회계기준 제정이후인 2000년부터 금액면에서 중요성이 이전기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부의영업권의 경우에도 보고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2000년 이후기간에 1999년 이전의 합병차익보다 인식건수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종전에 합병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이 주식취득을 기업결합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회계처리대상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영업권과 부의영업권의 경우 각각 무형자산과 무형자산 차감계정으로 인식되고 이후 상각 및 환입과정에서 보고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들의 상각 및 환입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영업권상각 및 부의영업권환입과 관련하여 명확하고 상세한 공시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연결감사보고서의 주석을 검토한 결과, 영업권과 부의영업권에 대한 기록은 정보이용자가 원하는

<표 12> 한화그룹의 부의영업권 일시 환입액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한화	한화석유화학	한화유통	연도별 합계
1999년	127,676	121,424	196,523	445,623
2000년	203,394	-	158,870	362,264
기업별 합계	331,070	121,424	355,393	807,887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2.3.14)

27) 참여연대. 한화의 분식회계에 대한 고발장. 2002년 10월 15일(고발인, 박근용).

정보를 얻기에는 일관성이 부족하고 충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영업권과 부의영업권을 발생시키는 대부분의 원천은 연결대상기업 간의 투자제거차액이며 특히, 부의영업권의 경우 지배주주의 통제가 수월한 계열회사 간의 기업결합 거래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다른 국가에서는 좀처럼 관찰하기 힘든 부의영업권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원인을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 연결감사보고서 주석에 보고하고 있는 영업권 및 부의영업권 상각·환입기간과 실제로 재무제표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각·환입기간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기업 내의 일관적이지 않은 보고형태를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액법을 사용하여 상각·환입하고 있는 기업은 확인 가능한 표본 중 일부에 지나지 않았으며, 상당수의 기업에서 비체계적인 상각·환입금액을 설정하여 보고이익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다른 연도에 비하여 당기순이익이 상대적으로 높은 해에는 보고이익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영업권을 이례적으로 많이 상각하고, 반대로 다른 연도에 비하여 당기순이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해에는 보고이익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부의영업권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환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섯째, 영업권상각기업은 비상각기업에 비하여 유의하게 재량발생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의영업권환입기업은 비환입기업에 비하여 재량발생액이 유의하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화그룹의 실제사례를 통하여 실무에서 사용된 부의영업권 관련 분식회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막연하게 짐작하고 있던 영업권과 부의영업권 회계처리의 취약점을 주식상의

보고내용과 상각 및 환입과 관련한 사후 회계처리에 근거하여 최초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영업권과 부의영업권의 발생원천을 유형별로 파악함으로써 다른 선진국에서는 좀처럼 발견하기 힘든 부의영업권이 우리나라에서 유독 빈번히 인식되고 있는 현상의 원인이 계열기업 간의 결합거래, 공정가치가 아닌 장부금액과 기업결합원가의 차이에 의한 부의영업권의 계상 및 낮은 주가장부가액비율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일 지배주주가 지배하고 있는 계열기업 간의 거래로 인한 부의영업권이 보고이익을 수월하게 조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공시충실성과 상각·환입의 비체계성 면에서 기업의 보고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영업권과 부의영업권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절차가 부실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영업권과 부의영업권 회계처리 실태와 주석의 보고내용을 실제사례와 함께 살펴보았다. 자료상의 제약으로 본 연구에서 미처 실시하지 못한, 상각과 환입의 비체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한 실증분석은 향후 연구 과제로 남긴다. 본 연구를 시발점으로 하여 향후 영업권과 부의영업권 보고에 대한 더 많은 사례 자료가 누적되어 다양한 측면에서의 실증적인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2002), 보도자료(3월 14일).
 신현걸(2004), "「기업인수,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 및 관련 세법 규정의 문제점,” **산학경영연구**, 17(2), 1-23.
- 오준환(2003), “성과선도모형을 이용한 지식자산가치의 측정 및 평가,” **회계학연구**, 28(3), 1-29.
- 윤재원 · 윤정원 · 최현돌(2006), “영업권상각과 부의영업권의 주가관련성: ‘사업결합’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을 중심으로,” **회계저널**, 15(4), 43-68.
- 정혜영 · 조성인(2004), “무형자산 관련 회계정보의 기업가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29(3), 1-31.
- 최관(2008), “한화그룹의 부의영업권 회계처리에 관한 사례연구,” **회계저널**, 17(3), 145-180.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1999), 기업인수 ·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 Accounting Principles Board(1970), APB Opinion No.16: *Business Combinations*.
- Barton, J. and P. J. Simko(2002), “The Balance Sheet as an Earnings Management Constraint,” *The Accounting Review*, 77 (Supplement), 1-27.
- Dechow, P. M., R. G. Sloan and A. Sweeney (1995),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The Accounting Review*, 70, 193-225.
-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2001),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141: *Business Combinations*
- Hennings, S., B. Lewis, and W. Shaw(2000), “Valuation of the Components of Purchased Goodwill,”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8(Autumn), 375-386.
- Hennings, S. and W. Shaw(2003), “Is the Selection of the Amortization Period for Goodwill a Strategic Choice?” *Review of Quantitative Finance & Accounting*, 20(June), 315-333.
- Herz, R. H., T. E. Iannaconi, L. A. Maines, K. Palepu, S. G. Ryan, K. Schipper, C. M. Schrand, D. J. Skinner, and L. Vincent (2001), “Equity Valuation Models and Measuring Goodwill Impairment,” *Accounting Horizons*, 15(June), 161-170.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2006),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3: Business Combinations*
- Jennings, R., R. Robinson, R. B. Thompson II, and L. Duvall(1996), “The Relation between Accounting Goodwill Numbers and Equity Values,” *Journal of Business, Finance, and Accounting*, (June), 513-533.
- Jordan, C. E. and S. J. Clark.(2004), “Big Bath Earnings Management: The Case of Goodwill Impairment under SFAS No. 142,” *Journal of Applied Business Research*, (Spring), 63-69.
- Kim, H. J. and S. S. Yoon (2008), “Accounting Choice through Business Combinations: The Case of Goodwill and Negative Goodwill,” *Korean Accounting Review*, 33(3), 261-290.
- Lander, G. H. and A. Reinstein(2003), “Models to Measure Goodwill Impairment,” *International Advances in Economic Research*, 9(August), 227-232.
- McCarthy, M. G., and D. K. Schneider(1995), “Market Perceptions of Goodwill: Some Empirical Evidence,” *Accounting and Business Research*, 26(Winter), 59-81.
- Moehrle, S. R., J. A. Reynolds-Moehrle, and J. S. Wallace(2001), “How Informative are Earnings Numbers that Exclude Goodwill Amortization?” *Accounting Horizons*, 15 (September), 243-255.

Accounting Practices for Goodwill and Negative Goodwill

Hyo Jin Kim* · Soon Suk Yoon**

Abstract

We investigate the accounting practices of Korean listed firms that recognized and amortized goodwill and negative goodwill from business combinations in the years of 1995 to 2006.

The acquirer shall, at the acquisition date, recognize goodwill from a business combination as an intangible asset. If firms amortize goodwill, the monetary amounts of amortization become expenses. Negative goodwill arises when the acquired company is purchased at a price lower than its fair value. This situation may arise either when the acquirer has a superior bargaining power, or when identifiable assets have been overstated or identifiable liabilities have been omitted or understated.

We witness a big increase in the recognition of negative goodwill from 2000 thanks to the new accounting standards for business combinations. The new standards allow firms to recognize negative goodwill when the acquisition price is lower than the acquirer's interest in the fair value of net identifiable assets acquired. We believe that the frequent recognition of negative goodwill in Korea is attributable to three factors: use of book value instead of fair value, low price to book value ratios and business combinations between affiliated firms.

The amortization of goodwill and negative goodwill affects both balance sheet and income statement. It implies that firms may have incentives to manage earnings by using goodwill and negative goodwill accounting. Furthermore, accounting standards for business combinations allow firms to choose arbitrary amortization periods. If firms amortize goodwill or negative goodwill, the amortization becomes a part of earnings and will impact debt ratios as well.

Accordingly, we expect that the firms with negative goodwill will have stronger incentives to manage earnings as compared to the firms without negative goodwill, particularly when

* Post-Doctoral Research Fellow, York University, Canada. Dr. Kim is grateful for her post-doctoral research fellowship support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 Profess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y amortize negative goodwill.

Based on the new accounting standards for business combinations which became effective from 2000, we divide our sample period into the 1995-1999 period and the 2000-2006 period. We find that increasing number of firms recognize goodwill as a result of increased business combination transactions. In addition, the ratio of goodwill amortization to net sales also increases in the 2000-2006 period. There are even more explosive increases in negative goodwill recognition in the 2000-2006 period, thanks to the adoption of the new accounting standards which allow firms to recognize goodwill or negative goodwill from elimination differences as well as mergers and acquisitions.

We reviewed all consolidated audit reports of firms that recognized goodwill and negative goodwill during the study period. We find that the major sources of goodwill and negative goodwill come from elimination differences while mergers and acquisitions account for much less. We document that the footnote disclosures on goodwill and negative goodwill are insufficient. Furthermore, the major source of goodwill and negative goodwill recognition comes primarily from business combinations between affiliated firms that are controlled by the same controlling shareholders. We also note that the amortization periods of goodwill and negative goodwill are not systematic. A serious inconsistency was found in the amortization patterns of goodwill and negative goodwill between the audit reports and financial statements, indicating that firms do not pay much attention to disclosures. To our surprise, only 16.5% of firms use the straight-line amortization method for goodwill and 31.7% for negative goodwill despite the fact that the accounting standards require firms to use the method over the period not exceeding 20 years. More than 50% of firms amortize good will and negative goodwill within five years, including about 13% of immediate write-off firms. Though some firms use the maximum amortization period for goodwill, none use the maximum period for negative goodwill amortization.

In order to measure the systematic application of amortization of individual firms over time, we use a ratio of the maximum over the minimum amount of amortization for the firms which have no increase in goodwill or negative goodwill. Theoretically, the ratio should be 1. However, the ratio ranges from 1.3 to 1,615 for goodwill and 215 for negative goodwill, indicating an arbitrary amortization rate of goodwill and negative goodwill in practice.

We further investigate how pre-amortization profit affects firms' amortization policy. When a firm amortizes goodwill or negative goodwill unusually high, this may indicate that the firm either has good or bad pre-amortization profit. We find that firms amortize goodwill unusually high in the year when pre-amortization profit is high relative to prior years. In

contrast, the treatment firms amortize negative goodwill unusually high in the year when pre-amortization profit is low compared to prior years.

We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rms amortizing goodwill or negative goodwill with the control firms in terms of accruals. Average accruals for the firms amortizing goodwill is generally lower than for the control firms, but there are no particular differences in accruals between the firms amortizing negative goodwill and the control firms.

The current accounting practices for negative goodwill accounting can be characterized by the opportunistic utilization of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business combinations by many conglomerate firms of Korea. However, our empirical results in general reveal that the impact of negative goodwill accounting on earnings and leverage ratios is not so far fetching as alleged by the regulatory body. In other words, despite the allegation and regulation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of Korea that some firms obviously used negative goodwill accounting opportunistically as a vehicle to manage earnings and debt ratios, our results support the allegation in a limited manner.

Key words: goodwill, negative goodwill, amortization, business combination